금융소비자보호기준

제 정 2021.09.25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기준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 32 조 제 3 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기준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」(이하 "감독규정"이라 한다), 내부통제기준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.

- 1. "금융상품"이란 회사가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.
- 2. "금융소비자"란 회사의 금융거래 상대방을 말한다.
- 3. "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"란 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권, 위법계약해지권 등 법에 따른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.
- 4. "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"이란 법 제 16 조 제 2 항에서 정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 준을 말한다.
- 5. "대리중개업자"라 함은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를 말한다.
- 6. "민원"이라 함은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를 포함하여,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또는 이해관계인 이 서면 또는 구두, 전자메일 등으로 제기하는 제반 이의신청, 진정, 건의, 또는 질의 등을 총칭한다.
- 7. "분쟁"이라 함은 소송, 조정, 중재를 포함하여 금융소비자와 회사 사이의 다툼을 말한다.

제 2 장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

제 3 조(금융소비자의 권리)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- 1.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
- 2.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3.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·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
- 4. 기타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

제 4 조(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방법) ① 회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법규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상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정보에 대한 안내 방법을 마 련하고, 소비자보호 및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안내시기·내용에 대한 매뉴얼을 정할 수 있다.

② 제 1 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특정 방법으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.

제 3 장 민원·분쟁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

제 5 조(민원의 접수 및 관리) ① 민원사항은 민원업무 주관부서(이 장에서 "주관부서"라 한다)에서 기록·관리·유지한다.

- ② 민원을 접수 또는 이첩 받은 부서는 즉시 해당민원을 주관부서에 이첩시켜야 한다.
- ③ 주관부서는 [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]으로 한다.

제 6 조(민원의 처리) ① 주관부서는 민원의 내용을 고려하여 해당업무 담당부서(이 장에서 "담당부서"라 한다)에 이송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그 내용을 검토하여 1개 부서를 지정하여 이송할 수 있으며, 지정된 담당부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조사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.
- ③ 민원서류 중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조사처리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7조(흠결의 보완 등) ① 주관부서는 민원내용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.

② 제 1 항에 의한 보완 또는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.

제 8 조(처리기간) ①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처리상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진정 또는 건의사항: 14 일
- 2. 질의사항: 7 일
-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7 장에서 별도로 정한 처리기간이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민원 또는 관련 법규 등(감독기관의 행정지도 사항을 포함한다)에서 제 1 항과 달리 정한 민원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다.

제 9 조(기간의 계산) ① 민원사무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서류가 회사에 최초로 접수된 날부터 민 원인에게 최종 회신을 발송한 날까지로 하되 최초 접수일과 최종 회신일은 1 일로 본다.

② 민원사무처리기간은 "일"단위로 계산하며,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.

- 1. 민원서류의 보완,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
- 2. 사실조회,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
- 3.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
- 4. 회사의 휴무일
- 5.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기간
- ③ 민원을 민원사무 처리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민원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(민원처리결과 회신) ① 담당부서는 민원사항을 지체없이 조사하여 완결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주관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담당부서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답변서를 문서로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② 주관부서는 민원인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민원사항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주관부서장은 민원처리의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기 전에 준법감시인과 그 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.
- ④ 민원처리 결과의 회신이 주소나 성명 등의 불명으로 2 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.

제 11 조(분쟁처리 원칙) 주관부서는 금융소비자와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표이 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민원·분쟁 전산처리시스템) ①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·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[별표 1]과 같은 내용의 민원·분쟁 전산처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.

- 1. 금융소비자의 민원 상황 및 처리결과
- 2. 금융소비자와의 분쟁조정·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
- ② 제 1 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은 진행 단계별로 구분되어야 하고, 각 단계별 소요기간, 업무담당자를 명시하여야 하며, 민원·분쟁 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의 주요 내용을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안내·통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제 1 항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처리시 접수사실 및 사실관계 조사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고지하며, 민원인의 의견을 회사 경영에 반영하여 민원예방에 노력한다.
- ④ 회사는 민원처리 결과를 금융소비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, 사실관계 조사결과 등 명시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며, 민원처리 후에는 처리결과를 문서, 팩스, 전자우편, 문자메시지,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한다. 단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제 7 장에서 별도로 정한 통지방법이 있으면 그에따른다.

제 4 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·인력

제 13 조(운영 조직 및 인력) ①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은 준법감시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.

-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부합하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준법감시인이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을 설치·운영한다.
- ③ 회사는 금융소비자 업무를 전담하는 자에 대한 근무 평가 시 징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,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인사 상 가점을 부여하며, 타 업무 담당자 등 타 직 군 등에 비해 직군차별, 승진 누락 등 인사평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
제 14 조(총괄책임자)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한다.

- 1. 최근 5 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
- 2. 최근 5년간 감봉(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포함한다)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
- 3.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에 따른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일 것
- ②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7조 제3항에서 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 위임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.
 - 1. 금융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의 수립
 - 2. 금융상품 각 단계(개발·판매·사후관리)별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에 관한 관리·감독 업무
 - 3.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관리·감독 업무
 - 4.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관계부서 간 피드백 업무 총괄
 - 5. 대·내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업무 총괄
 - 6.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·관리
 - 7. 매년 1회 이상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부서별 점검
 - 8.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내용에 상응하는 조치방안 및 조치기준 마련
 - 9. 기타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
-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 내용을 매년 1회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인사 및 평가에 있어서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공정한 업무평가 기준 및 급여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, 민원발생건수 및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등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급여 등 보상에 연계해서는 아니 된다.
- 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민원의 발생 또는 예방을 포함하여 각 부서 및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금융소비자보호에 충실하였는지를 조직 및 개인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평가도구를 마련하여야 하고 그 평가 비중은 성과평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정도여야 한다.

제 5 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·조치 및 평가

제 15 조(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등)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임직원등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가 금융소비자 보호기준,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규를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매년 1회이상 평가한다.

-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위법위규행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점검사항을 포함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, 금융소비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와 위법위규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.
- 1. 금융소비자의 피해현황 및 회복가능성
- 2. 위법위규행위의 중대성
- 3. 위법위규행위의 고의성
- 4. 위법위규행위의 반복성(해당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)

제 16 조(금융소비자보호기준 등 위반시 처리)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법, 시행령, 감독규정,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이 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 거나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·부당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.

제 6 장 민원·분쟁 대응 관련 교육·훈련

제 17 조(임직원 교육·훈련 등)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민원·분쟁 대응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 기준에서 정하는 민원·분쟁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처리시스템 활용에 대한 교육 과정을 매년 1회 이상 진행하고,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한다.

-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과거 민원 이력, 금융감독원 검사 및 현장점검 사례 등을 감안하여 임직원 중 위법부당행위 유발 임직원을 지정·관리할 수 있으며, 동 임직원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행위 예방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부서에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교육과정의 참석 상황, 참여율, 내용, 자체 만족도, 민원관련 교육 효과 등을 분석하여 기록 및 보관하고,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추천한 금융소비자보호 우수직원 또는 우수부서의 내용을 심의하여 해당 직원 또는 부서에 표창, 특별휴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

제 7 장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

제18조(담당부서) ①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담당한다.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른 부서에 협조를 요 청할 수 있고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19 조(자료열람 요구권에 관한 기준 및 절차) 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 자료의 열람(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)을 요구할 수 있다.

- 1.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
- 2.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
- 3.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
- 4.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
 - 가.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 제한 및 거절
 - 나.청약의 철회
 - 다. 위법계약의 해지
- 5.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
- 6.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
- ②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를 받은 부서는 자료열람 요구의 목적 및 열람을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여 즉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른 부서에 금융소비자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가 자료열람 요구의 목적 및 열람을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를 특정하여 자료열람 요구를 한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, 해당 자료열람 요구를 접수한 부서로 하여금 금융소비자에게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단,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 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

제 20 조(일반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한 기준과 절차)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7 일(회사와 일반금융소비자 사이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)내에 서면등(서면, 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방법을 말한다)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, 제 2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락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.

- 1. 계약서류를 제공한 날
- 2. 계약체결일(법 제 23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)
- ② 회사가 청약의 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일반금융소비자가 제1항의 행사 기간을 도과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
 - 2. 금융상품이 법, 시행령, 감독규정 등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금융상품이 아닌 경우
 - 3. 일반금융소비자가 예탁한 금전 등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(회사가 해당 일반금융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7 일간 청약철회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직접 서명, 기명날인,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 은 경우이어야 한다.)
- ③ 회사는 제2항의 사유가 없는 한,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

금전등을 반환하고,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·재화·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
- ④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본조에 따른 청약철회권의 행사 및 거절과 관련한 각 사유가 있는 지 확인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른 부서에 사실확인 또는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,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.
- ⑥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(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)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.

제 21 조(위법계약해지권에 관한 기준과 절차) ① 금융소비자가 회사가 법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, 적정성 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하여 체결한 금융 상품에 관한 계약으로서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의 해지를 서면등으로 요구하는 경우(이하 "위법계약해지권"), 회사는 제 2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락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한다.

- 1.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
- 2.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
- 3. 금융소비자가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(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 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)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을 것
- 4.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명칭, 법 위반사실이 기재된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하였을 것
-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계약해지권이 행사된 계약의 해지를 거절할 수 있다.
 - 1.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
 - 2.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
 - 3.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
 - 4. 회사가 본조 제 3 항의 기한 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·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한 경우
 - 5. 금융소비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경우
- ③ 회사는 위법계약해지권이 행사된 경우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,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에 따른다.
 - 1.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금융소비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: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
 - 2. 사실 확인 또는 자료 확인을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: 연 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

- ④ 회사가 본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⑤ 본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고, 회사는 수수료,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.
- ⑥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본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 및 거절과 관련한 각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이를 위하여 다른 부서에 사실확인 또는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22 조(휴면, 장기미청구 금융재산 발생 예방을 위한 절차) ① 금융상품 판매 및 마케팅 담당 부서는 상품의 신규가입·유지 단계에서 금융상품 만기 시 처리방법(재예치·입금계좌 설정 등) 및 만기통보방법 지정 등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는 한편,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② 금융상품 판매 및 마케팅 담당 부서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재산이 만기에 도달한 경우 그 사실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.
 - 1. 서면교부
 - 2. 우편 또는 전자우편
 - 3.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
-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휴면, 장기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예방을 위하여 매년 휴면, 장기미청구 금융재산의 실태를 파악하고 금융상품 판매 및 마케팅 담당부서로 하여금 전항의 방법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다시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23 조(정보의 시의성 확보)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제공시기 및 내용을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정보제공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공시자료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료를 수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 8 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 점검·조치 및 평가 등

제 24 조(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사항 점검 및 제도 개선)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과 관련한 민원·분쟁이 빈발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,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제도개선 조치를 요청하고, 개선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.

- ② 제도개선을 요구받은 관련 부서는 신속하게 개선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,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그 개선계획 진행사항 및 그 결과를 대표이사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금융소비자와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가 자료열람 요구, 청약철회권 또는 위법계약해 지권의 행사, 기타 금융소비자보호법규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

④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민원제기, 자료열람 요구, 청약철회권 또는 위법계약 해지권의 행사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야 한다.

제 25 조(대리·중개업자 관리기준) ①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가 대리·중개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필요한 경우 회사의 각 부서에 대리·중개업자와의 위탁계약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및 금융소비자 개인(신용)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·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리·중개업자의 위탁계약 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한다.
- 1. 대리·중개업자와의 위탁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 절차
- 2. 대리·중개업자 영업행위 점검절차 및 보고체계
- 3. 금융소비자 개인정보보호(정보접근 제한, 정보유출 방지대책) 대책 및 관련법규의 준수에 관한 사항
- 4. 위탁계약서 주요 기재사항(업무 범위, 위탁자의 감사 권한, 업무 위·수탁에 대한 수수료 등, 고객정보의 보호, 감독기관 검사수용의무 등)
- 5. 대리·중개업자 실적 등에 대한 기록관리
- 6. 수수료 산정 및 지급기준
- 7. 교육프로그램, 교육주기,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
- 8. 회사 감사인의 자료접근권 보장
-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대리·중개업자가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, 해당 대리·중개업자에 대한 수수료 감액, 벌점 부과, 계약해지 등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위탁계약서에 반영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, 통보받은 부서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.

제 26조(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·개정) 이 기준의 제정·변경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1 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민원·분쟁 관리시스템

가. 모니터링 기능

회사는 민원·분쟁의 다발성, 변동추이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며, 이를 활용하여 조기 경보 등을 통하여 민원 예방이 실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. 또한 신상품 출시후 상 품별 고객불만 및 민원·분쟁발생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.

나. 신속성, 투명성 확보

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불만을 다양한 접수채널(방문, 전화, 서신, 팩스, e-mail, 인터넷 등)을 통해 접수하고, 금융소비자불만이 접수되는 즉시 민원 접수사실, 민원처리 담당자 성명, 전화번호 등을 민원인에게 문서, 팩스, e-mail, 문자메시지,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하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,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한다.

민원의 접수, 처리 과정은 총괄부서 및 유관부서(영업점 포함)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금융소비자불만의 처리기한은 접수시간부터 처리결과에 대한 안내시점까지 관리하여야 하며, 상품별 금융소비자불만의 유형에 따라 구분·처리하여야 한다.

다. 전산화

회사는 민원·분쟁의 접수단계에서 종결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전산시스템 (음성녹취, 이미지스캐닝, E-mail, SMS 서비스등)을 개발, 운영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. (단, 민원·분쟁건수가 적어 수작업 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 가능)

라. 모든 처리결과 Data Base 화

민원·분쟁처리 시스템내에는 유형별, 원인별, 상품별, 부서별, 영업조직별 통계 Data 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, 문제 영역에 대해서는 조기대응 및 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.